

CONTENTS

업무보고 [제 365호]

주요업무 및 업계애로 해소 추진 현황	02
각종 회의 개최 및 참가	08
건설법령 개정 동향	11
기타사항	23
2019년 01·02·03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25
건설업체 현황	26
회원사 무료 상담 서비스	29



「주요업무 및 업계어로 해소 추진 현황」

가. 도로함몰예방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종합공사 발주건의

- 건 의 처 : 종로 · 송파 · 금천구청
- 건의일자 : '19.1.23, 3.5, 3.7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함몰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이나 전문공사로 발주되어 시설물의 품질 · 안전 문제 및 종합건설업체의 물량 감소
- 또한 추정가격 7억 이상 전문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제한입찰 적용이 불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며 원거리 업체의 수주시 직접시공 문제로 시공 품질 저하 우려

■ 주요 건의사항

-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의 필요성과 부대공사, 지방계약법령상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토부 예규 및 유권해석 등에 따른 종합공사 발주 건의

나. 서울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를 위한 적정발주 건의

- 건 의 처 : 서울시(재무과,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의일자 : '19.3.20

■ 현황 및 문제점

-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입찰공고(3.15)
-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면허 모두를 등록한 자(공동이행방식 가능)를 대상으로 입찰공고하여 대다수 서울지역 중 · 소 종합건설업체의 입찰 참가기회 박탈

■ 주요 건의사항

- 효율적 시공을 통한 시공품질확보를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변경 건의

■ 건의결과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향후 서울시 중 · 소 종합건설업체의 입찰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 ·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함(3.27)

다.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운영 개선 추진

- 건 의 처 : 서울시(건설혁신과 · 도기본) 및 서울시의회, 본회(계약제도실)
- 건의일자 : '19.3.19, 4.3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서울시 건설업 혁신 3불 대책('16.12.28)」에 따라 2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토록 추진중이며, 최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방안'을 마련 · 시행('19.2.26)

- 발주기관(서울시 기초자치단체 등)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가능한 종합공사 판단시 공중분리 검증위원회를 통해 전문공중 분리 및 서울시(건설혁신과) 검토를 거쳐 발주
- 그러나 공중분리 검증위원회 및 서울시의 검토절차로 시비사업 이외의 기초 지자체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강제하거나, 부계약자의 시공비율이 주계약자보다 높게 발주되는 사례 발생
 - (서울시 입장) 기초자치단체 등 산하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발주 통제 등은 없으며, 지자체 등 발주기관 판단사항임

■ 건의 및 추진 내용

- ①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운영개선 종합건의(서울시, 서울시의회)(19.3.19), ② 부적정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지양건의(서울시, 3.22), ③ 본회에 부적정발주 개선을 위한 행안부 유권해석 및 지침시달 협조요청(4.3), ④ 계약업무담당자협의회를 통한 업계 의견수렴(4.5)

서울시, 서울시의회 건의사항(3.19)

-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역폐지에 따라 건산법 개정상황을 감안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방향을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재검토
 - 부계약자를 전문건설업자로 제한하는 발주행위 개선
 - 시비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주계약자관리방식 발주 실적 보고 등 간접 발주확대요구 지양
 - 주계약자공동도급 적용 시 하자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공사 효율성이 감소되는 공사는 발주 대상에서 제외
 -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시, 계획·관리·조정 대가지급 기준 마련 및 적정원가 반영

- 기 집행 주계약자관리방식 발주공사에 대해 학계·연구계·업계·발주기관 등 전문가 참여 통해 성과 검증·제도 개선사항 마련한 후 관련 법령 개정

서울시 및 25개 구청 건의사항(3.22)

- ① 2개 공중 이상의 복합공중공사는 종합건설공사로 발주
- ② 주공중 및 부대 복합공중공사를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부계약자보다 높게 공중 분리

본회(계약제도실)에 행안부 예규 개정 및 지침시달 협조 요청사항(4.3)

- ① 2개 이상 공중의 복합공중공사는 종합건설공사로 발주
- ②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시 주계약자가 주공중을 시공하고 시공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공중분류하여 발주
- ③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서 주계약자의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시공 가능한 경우를 유권해석으로 명확화(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④ 주계약자관리방식 적용불가 대상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중 '소방공사 삭제'(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아울러 서울시에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운영개선 종합 건의(3.22) 및 계약업무담당자협의회를 통한 업계 의견 수렴(4.5)

■ 건의결과

- 서울시(안전총괄실)는 시의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업계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회신(4.11)
 -향후 서울시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업계 현안사항 및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운영개선 지속 추진

라. 복합공종공사의 종합공사 발주 건의

- 건 의 처 : 서울시설공단, 서울시(건설혁신과, 교량안전과), 본회(계약제도실)
- 건의일자 : '19.4.16 · 17 · 18

■ 추진경위

- 서울시설공단은 도장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2개 전문공사가 복합된 복합공종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 (이종의 전문건설업간 분담이행방식 허용)
 * 2019년 탄천1고가교 외 1개소 보수공사
- 이에따라, 우리시회는 건산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적정발주 건의(4.16)
-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의 '한강교량 강구조물 도장 유지관리 개선방안'* 및 건설혁신과의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공사로 발주(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바, 향후 협회건의 내용 적극검토하겠다는 의견 회신(4.17)
 *도장공사가 주공종이고 포장 등 토목공사가 포함된 2개 공정 이상인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과 도장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토록 권고

■ 주요 건의사항

- 우리시회는 서울시에 복합공종공사의 종합발주 건의 및 복합공사의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분담이행) 발주는 건산법 위반이므로 '한강교량 강구조물 도장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정정·재시달 건의(교량안전과, 건설혁신과, 4.17)
- 또한, 본회에 '이종간 전문업체의 분담이행 가능여부'에 대해 행안부의 유권해석 협조 요청(4.18)

마. 서울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 대응

■ 추진경위

- 과거 두 차례 발의('14.2.7 '14.8.28)후 폐기된 「서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재발의(문장길 의원, '19.1.31)
- 우리시회는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시공연계성 상실, 하자책임 불명확, 발주자 선택권 제한 등 문제점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제정반대의 견 제출('19.2.12) 및 방문 건의(2.19, 2.22)
- 이에 서울시의회는 업계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4.20)

조례(안) 주요 내용

- 가. 서울특별시가 공공시설물 공사를 추진할 경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여 공공시설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안전의 향상을 목적으로 규정
- 나. 조례에 적용되는 공공시설물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
- 다. 시장에게 소방시설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토록 함
- 라. 공공시설물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토록 하고 예외 규정 명시

■ 주요 건의사항

- 소방시설공사의 특성상 타공사와의 시공연계성이 높아 하자책임이 불명확하여 국민 피해 우려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계약 공개 등 불공정·저가하도급 폐해방지제도 도입으로 인한 분리발주 명분 상실
- 시공연계성 상실로 시설물의 품질, 안전 및 재난방지에 역행

■ 건의결과

-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4.22)되었으나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반영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정 및 심의 보류

- 참석자: 회장, 회장단, 본회 회장,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부영그룹 회장, 건설기술교육원 원장, 건산연 원장, 변철형 변호사, 대의원·운영위원·대표회원, 회원사 CEO 및 임직원, 유관기관 임원 등 300여명
- 강의주제: “CEO의 자서전과 묘비명”
- 무엇을 하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 -
- 강연자: 박명재(국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 홍대식 교수 초청 조찬강연회 개최



- 일 시: '19. 3. 13(수) 07:30~
- 장 소: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호텔 6층 메라크룸
- 참석자: 회장, 회장단, 본회 회장, 건산연 원장, 박찬 변호사, 대의원·운영위원·대표회원 및 임직원, 유관기관 임원 등 총 100여명
- 강의주제: 5G가 가져오는 미래
- 진화하는 건설산업의 DNA -
- 강연자: 홍대식(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다. 계약업무담당자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 일 시: '19. 4. 5(금) 11:00~12:00

「 각종 회의 개최 및 참가 」

가. 2019년 신년교례회 및 박명재 국회의원 초청 강연회 개최



- 일 시: '19. 1. 17(목) 07:30~
- 장 소: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호텔 7층 셀레나홀

- 장 소 : 건설회관 8층 회의실
- 참석자 : 양우건설 이현민 부장 등 위원 10인
- 회의내용
 - '서울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대응
 - 서울시의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조례(안)' 제정 대응
 - 서울시 상·하수도공사 적정발주 추진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수행 시 애로사항 의견 조회 등
- 회의결과
 - 서울시 및 기초지자체에서 발주되는 주계약자공동도급공사의 발주형태, 공종 등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별 공종분석 및 부적정발주시 협회·업계 공동 대응
 - 분회 협조를 통해 '복합공종공사의 종합공사발주, 주계약자 시공비율 상향 등' 행안부 지침 시달 추진



「건설법령 개정 동향」

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18.12.28)

■ 주요 개정내용

- 발주청의 공사기간 부당삭감, 과잉계상 금지 등 적정 공사기간 확보 의무 부여
- 설계자로 하여금 동 기준에 따라 공기 산출, 발주청은 공기 적정성 검토, 결정 공기를 현장설명서(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반드시 명시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준비기간 : 하도급업체 선정, 인·허가업무 지원, 도면검토, 측량, 가설건물 설치, 자재·장비 조달 등 공사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 설정
- 비작업일수 : 월별로 법정 공휴일수와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불가능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
- 작업일수 :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하며, 공종별로 표준작업량을 활용하여 산정
-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및 보완, 청소 등 현장 정리기간(1개월 범위내)

- 시행일 : '19.3.1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건설 사업부터 적용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18.12.31)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주요 개정내용

- 건설업 산재발생률 산정 기준 변경(환산재해율 → 사망만인율)

- 사망만인율은 '19년 사망자부터 적용되므로 PQ반영은 '20년 이후 적용 예정
※ 산정 대상은 전체 종합건설업체로 확대 예정
- 산재 보고서, 근로자 대표 확인 생략 가능 규정 삭제 (제4조제4항)
 - 근로자대표가 없을 경우 재해자 본인 또는 근로자 대표 선출 후 확인을 받도록 함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및 횟수 확대(제32조제3항 및 별표6의5 제3호가목)
 - 3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및 건축허가 대상
 종전) 공사금액 3억~120억 미만 현장
 → 개정)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현장
 ※ 3개월 미만 공사 제외 → 1개월 미만 공사 제외
 - 월 1회 → 월 2회 (방문지도는 4달에 1회로 유지)
- 시행일 : '19. 1. 1
 -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확대 적용 시행일
 1. 공사금액 2억원 ~ 3억원 미만 : '19. 7. 1
 2. 공사금액 1억원 ~ 2억원 미만 : '20. 1. 1
 -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
 - 중대재해 목격 근로자 심리치료(트라우마 치료 등) 비용
 - 소화기 및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비용
 - (폭염) 쿨토시, 아이스조끼, 제빙기 임대비용*
* 6월~10월 사용 제빙기 임대비용으로 한정

- (한파) 핫팩, 발열조끼
- 타워크레인 작업 시 유도 · 신호업무만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
- 시행일 : '18.12.31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시행('18.12.31)

■ 주요 개정내용

- 건설업 산재발생률 산정 기준 변경 (환산재해율 → 사망만인율)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및 횟수 확대
 - (종전) 3억원 이상, 월 1회 → (개정) 1억원 이상, 월 2회
 ※ (종전) 3개월 미만 공사 제외 → (개정) 1개월 미만 공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 중대재해 목격 근로자 심리치료 비용, 소화기 및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비용, (폭염)쿨토시 · 아이스조끼 · 제빙기 임대비용, (한파)핫팩 · 발열조끼, 타워크레인 유도 · 신호업무 담당자 인건비

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19.1.15)

■ 주요 개정내용

- 법체계 정비 및 적용대상 확대
 - (현행) 근로자 → (개정) 일하는 사람(제1조)
 - 도급, 도급인 · 수급인 · 관계수급인, 건설공사 ·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제2조)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14조)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이사회 승인) 의무 신설(제14조)
 - *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 시행령 개정(안) : 토건시평액 상위 1000개 업체
 - 도급인의 의무 조치 범위 및 대상 확대(제63조)
 - * 범위: (현행) 도급인의 사업장 및 제공한 장소 → (개정)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 * 대상: (현행) 관계수급인 근로자 → (개정) 수급인근로자
- 처벌강화
 - 위반시(제169조) :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시(제167조) :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5년 이내 재범시 그 형의 1/2까지 가중
- 건설업 특례에 관한 절 신설
 - 공사계획 단계별 발주자의 계획 수립·검토의무 신설(제67조)
 -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제76조)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14조*는 공포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적용
 -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승인 의무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공포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발생 산업재해부터 적용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 시행 이후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마. 조달청 낙찰자 결정제도 개정('19.1.1)

■ 주요 개정내용

- 종심제 배치기술자 요건 완화
 - 중소기업(3등급 이하) 배치기술자 보유요건 완화(6개월 → 3개월)
 - * 3등급 이하 업체가 3등급 이하 일반공사에 입찰시 적용
-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 도입
 - (PQ 및 적격심사기준) 일자리창출 우수업체 가점(신인도)
 - * 최근 년도 건설고용지수 평가등급(+3) 혹은 일자리창출 실적(+2.5) 중 택일
 - * 50억 미만 적격심사시 동신인도(+3 또는 +2.5) 평가 신설
 - (종심제) 건설인력 고용평가를 사회적 책임 가점에서 공사수행능력 배점 (1점*, 최소 0.6)으로 전환
 - * 2020.1.1. 이후 1.5점으로 확대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한 가점제 도입
 - 자발적 노동시간 단축업체로 고용노동부의 확인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가점제(+1) 도입(50억 미만 적격심사)
- 적격심사시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방법 개정
 -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시 (현행) 입찰금액 대비 82% + (신설) 조사금액 대비 60% 모두 만족시 만점
- 종심제 심사제외 대상 기준 일부 개정·신설
 - 일부 법정경비*의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현행) 기준 금액의 997% 미만 → (개정)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 주계약자방식 적용시 입찰금액상 '부계약자의 직접공사율*'이 조사금액상의 해당 비율 미만인 경우

$$*부계약자의 직접공사율 = \frac{\text{부계약자의 직접공사비}}{\text{전체공사자의 직접공사비}}$$

• 시행일 : 2019. 3. 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바. 2019년 적용 고용노동 관련 고시 안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한 2019년도 건설업 적용 규정

구분	고시부문	고시내용		비고
		2019년도	2018년도	
산재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7.5/1,000	40.5/1,000	보험료징수법 §14③, ④
	건설공사 노무비율	총공사금액의 27%	총공사금액의 27%	보험료징수법 §13⑥
		하도급 공사금액의 30%	하도급 공사금액의 30%	
고용보험	건설업 월평균보수	3,906,885원	3,619,987원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2①
장애인고용의무	건설업적용대상 공사실적액	86억8천1백만원	75억7천5백만원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28①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1,048,000원 (1인당/월)	945,000원 (1인당/월)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28①, §28의2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시간급	8,350원	7,530원	최저임금법 §10①

사.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19.2.15)

■ 주요 개정내용

- 시·도지사는 발령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
* 공사장 조업 단축 여부 및 단축수준은 시·도지사가 결정
- 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 요청 가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미세먼지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 당일 초미세먼지(PM_{2.5}) 평균 50ug/m³ 초과 + 내일 초미세먼지(PM_{2.5}) 24시간 평균 50ug/m³ 초과 예상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초미세먼지(PM_{2.5}) 75ug/m³ 이상 2시간 지속) + 내일 초미세먼지(PM_{2.5}) 24시간 평균 50ug/m³ 초과 예상
- 내일 초미세먼지(PM_{2.5}) 24시간 평균 75ug/m³ 초과 예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시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비용 청구(계약금액 조정)가능
 - (공공)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가능
 - (민간) 개정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
* 다만, '18.8.9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이전 계약된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협의 필요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 가능

아. 기재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19.1.4)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 혁신성장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적정성 제고

1) 기술중심형 낙찰제도 도입

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범위조정

※ 시범사업 실시('19.1분기~)

- 중소기업 공사에 대하여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하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중심제 적용대상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 100억원~300억원 공사는 소규모업체 수주영역임을 감안, 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간소화하고 가격심사기준 강화

주요 내용

- 수행능력 배점축소 : 40~50점 → 30점
- 시공실적 완화 : 동일공사실적 비적용
- 배치기술자 완화 : 6개월 보유요건 비적용
- 매출액비중 및 시공평가점수 : 적용배제
- 덤핑방지 장치(예시)
 - 단가심사 감점범위 확대 : ±18% → ±15% 초과
 - 직접노무비 낙찰배제 기준상향 : 80% → 90% 미만 투찰

-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 보완 후 전면도입('19년중)
⇒ 협회 입장 : 조건부 수용(낙찰률 85%이상 보장, 변별력 강화 최소화 등)

참고사항

상기 내용은 금년 중 시범사업을 거쳐 100억~300억 미만 공사에 도입·추진 예정인 '간이중심제'에 관한 것이며,

300억 이상 현행 중심제 공사의 경우 협회건의로 최근(계약예규 '18.12.31 개정) 배치기술자 보유요건이 완화(3등급 이하 일반공사, 3등급 이하 업체의 경우 6개월→3개월)되었음

※ 중소기업 부담완화 위해 300억 이상 중심제 배치기술자 보유요건 폐지 지속 건의 예정

나) 대안제시형 낙찰제도 도입

※ 시범사업 추진('19년 중)

- 입찰자가 시공방법 등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해 우수제안자간의 경쟁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
- (적용대상) 중심제 공사 중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 1,000억원 이상 중심제 공사 발주현황('16년) : 45건(7조원)
- (평가방법) 1단계(공사수행능력) → 2단계(제안서 및 가격)
 - (1단계) 공사수행능력·사회적책임·시공계획 평가 합산점수 상위 5개사를 2단계 심사대상으로 선정
 - (2단계) 제안서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 최고업체 낙찰
※ 가격평가시 덤핑방지 위해 예정가격대비 75% 미만은 낙찰배제

다) 공사유형별 기술평가 기준 개발·확산

※ 중심제 특례승인(공공기관)

- 현행 중심제 틀 내에서 공사의 기술적 특성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유형별 평가항목 개발·확산

- 주택공사 하자발생 및 하자처리 품질수준 평가항목 신설
* 입주자 만족도 우수, 공사관리 우수,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발생, 부실자재 사용, 하자처리 미흡 등
- 발전·철도·도로 등 특수공사에 대하여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술평가 기준 개발 추진

2) 가격평가 합리화

가)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개선

※ 예규 개정('19년 上)

- 공사입찰 가격평가 기준 중 저가투찰 유도요소 개선 및 덤핑방지장치 보완
- 가격평가 만점기준(균형가격) 개선
 - (현행) 입찰금액 상위40%, 하위20%를 배제
 - (개선) 입찰금액 상위20%, 하위20%를 배제
- 동점자가 수인인 경우 낙찰자 선정방식 개선
 -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 → (개선)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 중심제의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세부공종 단가심사 도입

나) 적격심사 가격평가지 사회보험료 등 제외

※ 예규 개정('19년 上)

- 발주기관 제시금액을 가격경쟁 없이 100% 투찰하는 항목은 가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직접공사비 삭감방지)
- 제외대상(7)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 공사비 적정성 제고

가)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 개선

※ 예규 개정('19년 上)

- 발주기관이 대량구매 자재단가를 사급자재 단가에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감액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자재비 계상기준 마련
- 예정가격 산정시 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의무화*
* (예시)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이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사급자재에 대한 단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을 계상토록 명확화*
* 현재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

나)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명확화

※ 예규 기 개정시행('19.1.1)

- 예정가격 산정과정에서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명확화(±2% 범위 내)

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기준 합리화

※ 예규 개정('19년 上)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정하게 부담토록 합리적인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 추진
- 불가항력(민원, 천재지변 등)
 - (현행) 계약상대자 부담 → (개선) 발주기관 적정분담 수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 하도급업체 지출분 : 간접비 지급대상 포함 명시

라)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가격심사기준 강화 검토

※ 예규 개정('20년)

- 공공공사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공사비에 적정 반영되도록 가격심사기준 개정 검토

*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화('18년~'20년 시범사업 → '20년도입)

- 건설업 등록말소 전 업종과 일부·전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재등록시(6개월 이내) 변경등록 전 지역소재기간을 합산산정

- PQ 신인도 중 일자리창출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조정
- 시행일 : 2019.4.15.부터 적용

자. 조달청 공사원가 제비율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개정

■ 주요 개정내용

1)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19.4.17)

-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구분	'18 적용률(%)		'19 적용률(%)		비 고
	토목	건축	토목	건축	
간접노무비	11.7~12.8	7.2~8.0	11.8~13.0	7.2~8.1	규모별 최대 0.3%p 증가
기타경비	7.5~10.1	5.5~8.4	8.1~11.9	5.6~8.7	규모별 최대 1.8%p 증가
일반관리비	4.5~6.0		4.5~6.0		전년 동일
이윤	9~15		9~15		전년 동일

- 제비율 조정 효과(조달청 추정)

* 토목 공사비는 전년 대비 약 1.09% 상승

* 건축 공사비는 전년 대비 약 0.23% 상승

- 시행일 : '19.4.17 기초금액발표분부터 적용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지역소재기간 산정기준 개선(PQ 제7조제4항제4호가목(4))

「기타 사항」

제196차 운영위원·대의원 연석회의 개최

• 일 시 : 2019. 2. 14(월), 07:30

• 장 소 :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 남산 1번룸

• 참석자 : 운영위원 대의원 등 35인

• 회의내용

- 전차회의록 : 원안통과

- 보고사항 : 제도개선 동향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 원안접수

- 부의사항

· 제1호 의안 :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의 건
→ 원안 의결

· 제2호 의안 : 제30회 우수전문건설업체 수상자 결정의 건
→ 원안 의결

· 제3호 의안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26대 회장 선출관련 기준 결정의 건
→ 원안 의결

- 제4호 의안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26대 회장 추대위원회 구성의 건
→ 추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형위원회 13인 선출
- 제5호 의안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26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 선출
- 제6호 의안 : 제51회 정기총회 개최일시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결
- 제7호 의안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제26대 회장 선거일 결정의 건
(2019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일시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결

- 기타사항



「2019년 1·2·3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사 건수)

업체수	발급서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83	228	487	301	1,016

●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지분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사서	영업기간 확인서	공정관리 조직	10년간 동일 공종 실적	계
58	64	49	9	0	48	228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건)

간섭법 제제처분	우수업자 지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부정 당	산재 예방	계
66	6	47	42	54	44	2	84	2	49	57	34	487

다. 기타서류

(단위:건)

개별	건설공사실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인	회원 확인	계
	자기	총괄표	소계						
234	0	21	255	0	0	0	46	0	301

「건설업체 현황」

●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19.03.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8,420	2,960	1,914	3,229	29	288	10,391	2,960	1,915	3,853	342	1,321
비회원	4,336	177	644	3,377	33	105	4,485	177	644	3,485	42	137
계	12,756	3,137	2,558	6,606	62	393	14,876	3,137	2,559	7,338	384	1,458

●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19.03.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1,266	228	67	914	9	48	1,431	228	67	937	61	138
비회원	549	19	15	482	9	24	559	19	15	483	14	28
계	1,815	247	82	1,396	18	72	1,990	247	82	1,420	75	166

●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신고일자)
1	건축	103006	(주)성우종합건설	이만석	경기	2018-12-12(2019-01-04)

2	건축	102947	(주)에코앤삼일종합건설	허지훈	경기	2018-12-17(2019-01-08)
3	건축	050866	(주)미래현건설	권경득	광주	2018-12-19(2019-01-09)
4	건축	050782	(주)해성종합건설	최영운	경기	2019-01-15(2019-01-23)
5	건축	050858	벽성종합건설(주)	김민웅	광주	2019-01-15(2019-01-23)
6	건축	014220	신부건설(주)	김남중	인천	2019-01-14(2019-01-24)
7	토목	101681	(주)부경이엔씨	김창호	경기	2019-01-21(2019-01-30)
8	건축	050426	(주)스마트에이종합건설	박종희	인천	2018-12-28(2019-02-07)
9	건축	040686	(주)교원건설산업	이수용 신현도	인천	2019-02-18(2019-02-25)
10	건축	021496	(주)타운종합건설	고재성	부산	2019-02-27(2019-03-06)
11	건축	021500	백호종합건설(주)	이상훈	부산	2019-02-28(2019-03-07)
12	건축	021121	(주)다산종합건설	이명길	경기	2019-02-23(2019-03-18)
13	건축	040840	(주)명가종합건설	김윤태	인천	2019-03-05(2019-03-21)
14	건축	01-4075	(주)일원종합건설	임정희	경기	2019-03-20(2019-03-26)

●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신고일자)
1	건축	014334	(주)광성종합건설	정민화	경기	2018-12-06(2019-01-02)
2	토건	010504	(주)시티해양건설	임종완	경기	2018-12-11(2019-01-08)

3	건축	013142	(주)다움종합건설	정영수	전남	2019-01-14(2019-01-21)
4	토건	010481	엘에스빌드윈(주)	정교원	경기	2019-01-18(2019-02-01)
5	건축	014375	희성건설(주)	이희도 박오성	경기	2019-01-29(2019-02-08)
6	건축	014332	다움종합건설(주)	전광석	경기	2019-01-28(2019-02-08)
7	건축	014366	(주)대유종합건설	이화형 이생희	인천	2019-02-01(2019-02-13)
8	건축	014364	우리종합건설(주)	박명수	인천	2019-02-12(2019-02-19)
9	건축	014382	(주)에이치엠종합건설	최승집	경기	2019-02-18(2019-02-21)
10	건축	013790	토브종합건설(주)	오창수	경기	2018-08-17(2019-02-26)
11	건축	013194	석진종합건설(주)	이용근	광주	2019-02-20(2019-02-27)
12	건축	014404	주호종합건설(주)	이정자	경기	2019-03-14(2019-03-19)
13	건축	014208	한국도시건설(주)	조소은	대전	2019-01-24(2019-03-21)
14	건축	1229	(주)태혁건설	김관진 성낙철	제주	2019-02-26(2019-03-27)
15	건축	014338	(주)내외종합건설	심형기	경기	2019-03-21(2019-03-29)

회원사 무료 상담서비스 안내

- 상담방법 : 우리시회 사전신청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
※신청서식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자료/통계→건설서식→민원서식/기타) 참조
- 문의_ 법률 : 건설정책실 (02-3218-9117, pjingong@cak.or.kr)
회계/세무 : 기획총무실 (02-3218-9112, pje@cak.or.kr)

• 법률 상담 - 변호사

시회고문	박찬(朴燦) 변호사	변철형(邊哲亨)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우송	법무법인 진
위촉기간	'18. 8. 1 ~ '19. 7. 31	'19. 1. 1 ~ '19. 12. 31
비고	전직 부장판사	전직 부장검사
프로필	-서울대 정치학과('79), 법과대학원('82) -건국대 행정대학원 주거환경정비사업 전문가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7기 수료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전문부) -제45회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 -서울대 정치학과 법조모임 회장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	-고려대 경영학과('94)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검 검사(특수3부) -울산지검 검사 -인천지검 검사(특수부) -광주지검 부부장검사(공안부) -광주지검 목포지청 부장검사 -창원지검 특수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검사

• 회계/세무 상담 - 회계사/세무사

시회고문	한윤교 회계사	임의준 세무사
소속	반석회계법인 대표	세무법인 다솔리더스 대표
프로필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Univ. of Texas at Austin 경영대학원 졸업 -고려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Price Waterhouse Co. 와 Deloitte Touche LA 회계법인 근무 -골드만삭스 COO, 바클레이즈 은행 서울지점장 및 COO, SC 저축은행 부사장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86) -동부세무서 법인세과 -서울지방국세청 제1특별조사담당관실, 법인세과, 법무1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행정사무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팀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법령해석 담당사무관) -역삼세무서 법인납세과장 -강남구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위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주요 업무 소개

회원과 함께하는 시회, 회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주는 시회가 되기 위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회원사의 충실한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업무를 수행합니다

- 건설업의 신규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심사)
- 건설업의 양도와 법인합병 및 상속신고의 접수·신고 내용 확인(심사)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접수·확인 기재
- 건설공사 실적신고 수리
- 시공능력평가 및 등록수첩 기재
-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 등록수첩 기재
- 건설공사 도급하한 등록수첩 기재
- 국토교통부장관 지시에 따른 등록기준 실태조사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 건설관련 제도개선과 법령 상담도 서울특별시회가 앞장섭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 노동관계법령, 하도급관계법령
- 건설기술관리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 민자SOC 관계법령, 주택관계법령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 회원사에게 다양한 편익을 드립니다

- 회원사 업무 지도 및 상담
- 중소기업체 수주 영역 확대 도모
- 건설업 신규등록 업무 지원
- 조달청,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각급 발주관서 입찰 및 계약 업무 지원
- 각종 민원서류 발급 (PQ 및 적격심사, 자기공사실적 증명서, 경력임원사실 확인서 등)

⚙️ 합리적인 건설업 경영을 위해 도움을 드립니다

- 건설업 경영혁신을 위한 세미나 및 자료제작 배부
- 최신 경영기법, 공사원가 절감을 위한 교육
- 계약제도, 건설산업기본법령 실무해설, 건설공사 실적신고요령 강습회
- 건설현장 안전관리 교육, 기술안전관련 제도 강습회
-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재해예방 교육
- 공사발주정보 수집과 안내

⚙️ 각종 도서와 자료를 발간해 배부합니다

- 각종 법령집 및 참고자료 (회원명부, 건설관련법령집, 거래가격지, 건설업 경영분석, 통계연보, 건설수첩, 건설공사 원가분석, 건설기술상 수상 공법) 등 연 50여 종
- 건설현장 안전관리 교육, 기술안전관련 제도 강습회 자료
- 건설경영관리 및 정보화 세미나 자료

종합건설업 기재사항(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시 구비서류

공 통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법인 또는 사용인감 도장
상호, 명칭	법 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법 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임원명단 작성(별지) - 대표자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변경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명시 (지자체 신원조회 활용)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원명단 작성(별지) - 대표자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 변경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명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영업 소재지 (전입지에서 신고)	법 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 통	사무실위치도,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사진
	자기소유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 전,월세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임차보증금온라인입금확인증
	재임대차 (전대)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재임대계약서,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인감증명서, 임차보증금온라인입금확인증
	지방전입	지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서울-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다른 서류는 위와 동일함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법인등록번호 변경 증명서류
	개 인	주민등록증번호 변경 증명서류
국적 또는 소속국가 변경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변경 연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